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은퇴선수 지원 시책 추진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48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은퇴선수 지원 시책 추진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은퇴선수 지원 시책 추진(안 제6조제2항 제3호의2 등)

가. 개정안 요지

-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3호의2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u>3의2.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제11조의2(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진로 지원 시 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 은퇴 선수 진로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스포츠 기본계획 수립 시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책 추진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하므로 은퇴선수 진로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1조의2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 ‘2024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스포츠 프로선수 138명을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불투명한 향후 진로 38.4%,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34.1%, 적은 보수 32.6% 등’으로 답변함.

- 즉, 개정안 제6조에서 이미 이스포츠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은퇴선수 진로지원 정책만 별도로 수립·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업계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스포츠기본법」³⁾ 역시 스포츠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376

3) 「스포츠기본법」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스포츠 인력의 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 14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고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및 추진 현황**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50	(사)한국 이스포츠협회	이스포츠 은퇴선수 및 지도자 대상 심판/지도자 자격 취득 과정 운영 및 대회 기획·운영·미디어 등 이스포츠 산업 분야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